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0241

201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과 만족도 조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민 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과 만족도 조사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pecial Education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민 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과 만족도 조사

지도교수 김 남 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 민 하

김민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위 원 조선대학원 교수 김 남 순 (인)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v**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4.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6**

1. 특수교육법의 변천 및 주요내용 ---------- 6
   1) 특수교육법 제정 이전 ---------- 6
   2)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 6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 8
2. 신·구법의 개정내용 비교 ---------- 9
3. 선행연구의 고찰 ---------- 15

Ⅲ. 연구방법 ---------- **17**

1. 연구설계 ---------- 17
2. 연구대상 ---------- 17
3. 연구도구 ---------- 20
4. 연구절차 ---------- 24
5. 자료분석 ---------- 24

Ⅳ. 연구결과---------- 26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 26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 26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 27

2. 각 변인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28
1) 3개 집단(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간의 인식도와 만족도--------- 28
2)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31
3) 성별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33
4) 연령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36
5)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39
6)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42

3. 변수들간의 유의성 검증---------- 45
1)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 45
2)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의 관계---------- 46

Ⅴ. 논 의----------47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 47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47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48

2. 각 변인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49

3.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 49

Ⅵ. 결론 및 제언---------- **50**
1. 결론---------- 50
2. 제언---------- 51

참고문헌---------- **53**
<부 록>----------**55**

표 목 차

<표 Ⅱ-1>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비교 ----- 12
<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변수별 분포 ---------- 19
<표 Ⅲ-2> 설문지 문항의 구성 ---------- 21
<표 Ⅲ-3> 문항별 내적 일관성 ---------- 23
<표 Ⅳ-1> 3개 집단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29
<표 Ⅳ-2> 3개 집단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30
<표 Ⅳ-3>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31
<표 Ⅳ-4>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33
<표 Ⅳ-5> 성별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t-test 결과 ---------- 34
<표 Ⅳ-6>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 ---------- 35
<표 Ⅳ-7> 연령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36
<표 Ⅳ-8>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38
<표 Ⅳ-9>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39
<표 Ⅳ-10>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 41
<표 Ⅳ-11>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42
<표 Ⅳ-12>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 44
<표 Ⅳ-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46
<표 Ⅳ-14>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46

그 림 목 차

〔그림 Ⅳ-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각 집단별 인식도 ------ 27
〔그림 Ⅳ-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 ---------- 28
〔그림 Ⅳ-3〕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 ---------- 32
〔그림 Ⅳ-4〕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만족도 ---------- 33
〔그림 Ⅳ-5〕 성별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 36
〔그림 Ⅳ-6〕 연령별 따른 인식도 ---------- 37
〔그림 Ⅳ-7〕 연령별 따른 만족도 ---------- 38
〔그림 Ⅳ-8〕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별 따른 인식도 ---------- 40
〔그림 Ⅳ-9〕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별 따른 만족도 ---------- 41
〔그림 Ⅳ-10〕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별 따른 인식도 ---------- 43
〔그림 Ⅳ-11〕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별 따른 만족도 ---------- 44

ABSTRACT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pecial Education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ha Kim
Advisor : Nam-soon Kim,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surveying and analyzing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n the reform of「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and providing the basic materials to be utilized for suggesting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laws.

The research method on this study was conducting a survey to 203 of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school par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Survey method was used to collect the research materials and a validation process on the reliability with a provided scale was self-developed by the researcher and conducted through the study. As a result, Cronbach's α coefficient indicated an excellent reliability as 0.981.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wareness on the reform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among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school parents,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group showed the highest mark, followed by the school parents, and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in descending order. Compared to the awareness of the entire groups,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howed the highest mark, and the school parents and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showed relatively low awareness in the comparison with the average awareness of the entire groups. Similarly, in the satisfaction level,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school parents, and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showed the highest marks in descending order. Satisfaction levels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school parents were scored as higher than that of the entire groups, however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was lower compared to that of the entire groups.

Secondly, if looking at the differences in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s by variable, the general education teachers,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school parents which were the sample group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and the satisfaction level. As conducting the analysis on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teacher group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in education,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eachers' awareness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experiences in education, but in satisfaction leve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groups with different experiences in education and 15~20 years, 3~5 years , 10~5 years, 20~25 years, more than 25 years, and less than 1 year experience group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level in descending order. As comparing the average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o the gender, the result indicated tha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genders and the awareness of the females was higher. In the satisfaction level,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In the comparison of the awareness and the satisfaction level according the age, both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ut the satisfaction tended to increase as the age increased. Also, there was no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between the parent's disability types. The awareness and the satisfaction level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tudent's disability type.

Thirdl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reform of special education law. The result show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awareness and the satisfaction level. Namely, the higher awareness corresponded to the higher satisfaction level.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gnitive satisfaction and the actual satisfaction was analyzed among the satisfaction levels. In the result, ther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gnitive satisfaction and the actual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cognitive satisfaction corresponded to the actual satisfaction. The cognitive satisfaction is the satisfaction level on whether the special education law was successfully revised in accordance with its aims such as emphasis on individualized education, expanded opportunities for the guardians' participations, and the expanded supports for the related services, and the actual satisfaction is the satisfaction level on whether the revised contents of the law are being actually applied to

the fields. The conclusion that the cognitive satisfaction and the actual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has a meaning in that the satisfaction level which each group realizes coincides with the actual satisfaction.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내는 교사들과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들은 법과는 무관한 세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교현장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속도로 달라지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교육주체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문제 상황 내지는 갈등의 상황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학교현장에서의 문제발생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적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관련법은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사의 권리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 31조 제 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법률은 교육적 행위 일체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김재은, 2008).

2010년 현재의 교육현장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 그 변화의 바람에 따라 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더욱이 특수교육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되어 30년이란 시간동안 이 땅의 특수교육과 그 진흥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이 2007년 4월 30일 전격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라는 신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2008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바람이 더 크게 느껴진다. 특수교육법의 전면 개정은 특수교육에 많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의 원동력은 특수교육법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의 이론조차도 특수교육법의 규정과 근거 및 그 범위 내에서 제시·제안되고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이다(한현민, 2003).

최근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의 변화에 따라, 법률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시스템 운영을 개편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법이 정한 지침에 따라 조직의 체제를 구축한 분야도 있을 것이며, 준비 중에 있는 분야도 있겠고, 아직 행·재정적 지원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여건이 갖추어지길 기다리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시하는 특수교육의 모습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변화의 방향과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과,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법대로 처리하려는 행정적인 일처리들이 서로 뒤엉켜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법시행상의 혼돈을 겪고 있다(김용욱, 유종열, 백운찬, 2009).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어 2년이라는 시행 기간을 거치고난 지금 이 시점에서 특수교육의 핵심주체인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는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연구들은 법을 분석하고 내용을 해설하는 연구에 치중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법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김용욱, 유종열, 백운찬, 2009).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특수교육의 핵심 주체인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 5월 이후 시행되어 온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분석

하여 보고 앞으로 특수교육법 발전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인식도와 만족도는 각 변인(집단, 경력, 성별, 연령,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하며 만족도 중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에 제정되어 1994년까지 총 9차례의 개정의 과정을 거치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다. 총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 특수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으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교육기본법 제 18조에 근거한 것이

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교육의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가 통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3)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보호자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로 한정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개정의 내용 중 개별화교육 강화, 보호자 교육참여 기회의 확대, 관

련서비스 지원의 확대에 관련한 부분의 인식도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의 개정내용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법의 변천 및 주요내용

1) 특수교육법 제정 이전

1960년대 특수교육은 일반아동의 교육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었다. 1967년 당시 문교부는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설, 특수학교 초등부 과정의 의무교육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확고한 방침으로 말미암아 실제 추진에는 지연이 불가피하였다(김원경, 2004; 정영조, 2007).

2)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및 개정

1970년대에 들어 모든 국민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화 요구가 대두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특수 교육의 필요성 인식 등 국내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특수교육협회를 비롯한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과 당시 문교부의 결단으로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등 심신 장애자에 대한 교육 기회를 넓히고,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설정,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보조,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비지원, 특수교사의 자질 향상, 교과용 도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은 장애아동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늘렸고 전국 시·도에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총 9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1994년의 개정이 가장 폭넓고 획기적인 전면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16개 조문에서 5장 28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도입 등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김원경, 2004).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문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 대책의 강구,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 및 연구방법의 개선, 특수학교 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의 확충과 정비,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대책 강구,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연구 등이 있다.

둘째, 무상교육과 의무 교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셋째, 위탁교육의 실시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며, 국·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 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김재은, 2008). 이렇게 1977년 제정되어 2005년까지 총 9차례 개정 과정을 거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이다(김원경, 2001; 한현민, 2003;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6).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 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또한 최근에 들어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새로운 요구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수교육진흥법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의 요구나 최근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김은주, 2007).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에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6월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2006년 5월 최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 외 2005년부터 의원안으로 발의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7건 있었다. 이렇게 특수교육 관련 의원안 8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법전부개정

법률안」등 총 9건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마련되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25일 공포되었고 2008년 5월 26일 시행되게 되었다(김재은, 2008).

2. 신 · 구법의 개정내용 비교

지난 2007년은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맘껏 공부하며 일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해였다. 무엇보다도 2007년 5월 25일 공포되어 2008년 5월2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우리나라 장애인아동의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단순한 교육기회 제공뿐 아니라 영아기 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지원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새롭게 제정되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 출판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해설집」의 내용 중 주요 핵심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 확대

의무교육이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 대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 3세 미만의 영아와 고등학교 이후의 전공과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다.

2)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의 조기 발견이나 조기교육에 관한 절차 및 권리 규정이 없어 장애를 발견하는 시기가 늦었고, 장애를 발견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무상보육의 혜택만을 받을 수 있어서 장애영유아의 가정에서는 주로 사교육에 의존해야 했고 그에 따른 가계 부담도 상당히 컸었다.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무상의 선별검사 실시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아의 장애교정과 경감, 제2차 장애의 예방 및 발달 촉진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3) 교원의 자질향상

특수학급의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학교에 통합되는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일반교육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및 학습교수, 행동관리, 생활지도 등 지도능력의 신장이 요구된다. 이렇듯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일반교과 교육 연수 및 일반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를 규정하여 통합교육의 내실화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4)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 평가,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두도록 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개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통합교육의 강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일반학교에 통합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으로 배치하여 가능하면 분리되거나 제한된 환경이 아닌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치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능하면 통합된 교육환경에 배치하도록 하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을 학생 4명당 1인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학교, 학교급별 교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 센터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게 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기관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변화

1977년 재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2008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었는데「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부자유, ⑤ 정서장애, ⑦ 언어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등 9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장애, ⑤ 정서·행동장애, ⑥ 자폐성장애, ⑦ 의사소통장애, ⑧ 학습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⑪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11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에 있어서 구법과 비교하여 신법에서는 정서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분류와 함께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위해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장애영역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오는 편견과 인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한 발달지체라고 광범위하게 용어를 제시함으로 가소성이 큰 유아기에 다양한 교수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는 발달지체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법제처, 2008).

다음 <표 Ⅱ-1>은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교하여 표로 제시한 것이다. 표의 내용은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자료실에서 2007년 4월 29일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 Ⅱ-1>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비교

주요비교항목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대상자		장애를 가진 자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개념 규정	특수교육	교과교육 및 치료교육, 직업교육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직업	없음	'진로 및 직업교육' 이라 함은

주요비교항목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치료 교육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삭제
	관련 서비스	없음	○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까지 포함
무상, 의무교육 범위		영아 : 없음 유치원 과정 : 무상 초,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무상 전공과 : 없음	영아 : 무상 유치원 과정 : 의무 초, 중학교 과정 : 의무 고등학교 과정 : 의무 전공과 : 무상
생애 주기별 교육 지원 규정	영아 지원	없음	○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순회교육 제공, 특수학교 유치부 및 영아반 과정을 통한 지원
	유아 교육	구체적인 지원 규정 없음	○ 초중등교육에 준하는 교육지원 규정 ○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 규정
	초중 등교 육	○ 특수교육,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진로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을 제공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학교급별에 따라 초등의 경우 통합교육을 중등의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중시하

주요비교항목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 ○ 전공과의 경우 특수학교 이외의 곳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술교육 이외에도 사회적응교육 등 자립생활교육 과정도 제공하도록 함.
	고등교육	없음	○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 각종 편의제공 의무화 ○ 학칙 규정 의무화 ○ 심사청구 권리 보장
	평생교육	없음	○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설치 ○ 학교교육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보호자가 진단평가 의뢰 → 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진단평가 → 교육장(교육감)이 대상자 선정 통보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 의뢰 →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 등에 대한 진단·평가 → 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 교육장(교육감)이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의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
특수교육지원		없음	○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지역 주민과

주요비교항목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센터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학급 설치 규정	○ 시행령으로 위임 (기존의 1학급 설치 기준 : 1인 이상 12인 이하) - 시도교육청별로 1학급의 설치 기준을 4인 ~ 6인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에 제시 - 유치원 : 4인 - 초등학교 : 6인 - 중학교 : 6인 - 고등학교 : 7인
교원 배치 규정	○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학교 교원에 한해서만 배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시행령으로 위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절차상의 보호 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의 사항에 한해서만 심사청구 가능(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	○ 대상자 선정 및 학교 배치 이외에도, 각종 차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가능(시군구(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 ○ 대학 등에서도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청구 가능

3.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해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집단의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김재은(2008)의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개정 여부에 관한 인식, 특수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정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초등교사들은 특수교육법의 관련성,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많이 이해하고 있었으나 특수교육법의 개정과정과 개정내용의 인식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편이었다. 통합교육의 발전 동향은 잘 알고 있었으나 통합교육의 내실화 방안은 부담을 느꼈으며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보조인력 지원이나 특수교육운영지원센터 등의 설치, 운영 등 국가적 책무성을 많이 기대하였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련한 법 즉,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혜원(1992)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의 접근기회 균등과 과정 균등의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실태를 한국의 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과 미국의 전장애아동교육법(PL 94-142), 재활법(Section 504)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살펴본 후, 보상교육으로써의 특수교육이 교육 결과의 균등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과제를 법제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한규옥(2005)은 충남지역 초등학교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이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에 관한 자료를 고찰한 결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4개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경열(2006)은 영미 특수교육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고찰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관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각 국가들 중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두 나라 미국과 영국의 통합교육 입법절차와 통합교육 상황을 비교, 논의 하면서 우리나라 통합교육 입법절차와 통합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심인주(2010)는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교육관련법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의 구조와 내용분석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육관련 법률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그 성격은 달리하는 특성을 알 수 있었고,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이념에 대해서는 공통된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에서는 학습자와 학부모의 권리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나 IDEIA는 부모의 권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볼 때 한국의 특수교육법은 미국에 비해 적용범위가 훨씬 넓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조사를 위해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법은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측정도구의 변화에 따른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116개 초등학교의 142개 특수학급 중 임의로 선정한 60개 초등학교, 80개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3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0년 3월 24일, 특수학급이 설치된 60개의 초등학교에 각 5부씩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207부(69%)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4부의 설문지에서 문항의 응답이 빠져있는 등의 부적절함이 있어 제외한 후 203부의 설문지 결과만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변수별 분포인 <표Ⅲ-1>를 따르면, 신분에 따른 연구대상의 구성은 일반교사가 59명(29.1%), 특수교사가 80명(39.4%), 학부모가 64명

(31.5%)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표본의 구성은 남자가 25명(12.3%), 여자가 178명(87.7%)으로 차지하고 있고,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의 구성은 20대가 40명(19.7%), 30대가 97명(47.8%), 40대가 60명(29.5%), 50대 이상이 6명(3.0%)으로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연구대상의 구성은 1년 미만이 6명(4.3%), 1년~3년 미만이 13명(9.4%), 3년~5년 미만이 32명(23.0%), 5년~10년 미만이 44명(31.7%), 10년~15년 미만이 22명(15.8%), 15년~20년 미만이 11명(7.9%), 20년 이상이 11명(7.9%)으로 차지하고 있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변수별 분포

인구통계 변수	구분	표본수(명)	백분율(%)
신분 (N=203)	일반교사	59	29.1
	특수교사	80	39.4
	학부모	64	31.5
성별 (N=203)	남자	25	12.3
	여자	178	87.7
연령 (N=203)	20대	40	19.7
	30대	97	47.8
	40대	60	29.5
	50대 이상	6	3.0
교사의 교육경력 (N=139)	1년 미만	6	4.3
	1년~3년 미만	13	9.4
	3년~5년 미만	32	23.0
	5년~10년 미만	44	31.7
	10년~15년 미만	22	15.8
	15년~20년 미만	11	7.9
	20년이상	11	7.9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 유형 (N=139)	지체장애	38	27.3
	정신지체	46	33.1
	정서장애(자폐포함)	31	22.3
	시각장애	8	5.8
	청각장애	5	3.6
	기타	11	7.9
학부모 자녀의 장애 유형 (N=64)	지체장애	4	6.3
	정신지체	32	50.0
	정서장애(자폐포함)	20	31.6
	시각장애	0	0
	청각장애	1	1.6
	기타	7	10.9
계		-	100%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조항을 중심으로 개별화교육 강화, 보호자의 교육참여 기회의 확대, 관련서비스 지원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문항수는 총 32문항이며 문항의 수정·보완 절차는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각 5명에게 직접 전달하여 작성한 결과 문항의 난해함, 주어와 서술어와의 문맥적 불일치, 글자크기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논문 지도교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는 자기보고식이며, 모든 문항은 7점 척도이다. 각 척도는 등간 100점 척도로 재환산되고 100점 환산식은 (N(7점지수)-1) × (100/6)으로 계산한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다. 설문 내용은 다음 <표Ⅲ-2>와 같다.

<표 Ⅲ-2> 설문지 문항의 구성

구분		질문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Ⅰ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	개별화교육 강화 관련 인식	1-1~1-4	4
		보호자교육 참여기회 확대 관련 인식	1-5~1-11	7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 인식	1-12~1-19	8
Ⅱ	개정에 대한 인지적 만족도	개별화교육 강화 관련 인지적 만족	2-1	3
		보호자교육 참여기회 확대 관련 인지적만족	2-2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 인지적 만족도	2-3	
Ⅲ	개정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	개별화교육 관련 실질적 만족	2-4	3
		보호자교육 참여기회 확대 관련 실질적만족	2-5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 실질적 만족	2-6	
Ⅳ	기초사항	성별, 연령, 신분, 교육경력, 근무지, 장애유형	3-1~3-7	7
계				32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예비조사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각 10명씩 30부를 수집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재구성 작업을 한 다음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이란 측정된 결과의 안정성, 정확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일관성에 관한 개념으로서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할 경우 그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조사결과에 대해서 이 조사결과가 부정확한 측정 자료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채서일, 2000). 다시 말해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여

러 번 측정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 만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어떤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각 항목들과 설명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 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경우 Cronbach's α계수의 크기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계수값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그 항목과 전체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항목들이다.

<표Ⅲ-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정도를 나타내는 총 19문항으로 척도의 α계수가 0.98로 신뢰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α값을 높이기 위한 문항 삭제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전체가 문항-전체 상관이 0.78~0.92로 나타나고 있어서 문항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Ⅲ-3>문항별 내적 일관성

문항번호	문항이 삭제 되었을 때 평균	문항이 삭제되었을 때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문항이 삭제되었을 때의 alpha 값
문항01	1173.65	300384.70	.86	.97
문항02	1165.05	303895.46	.83	.98
문항03	1170.96	302499.40	.80	.98
문항04	1172.58	299306.45	.89	.97
문항05	1181.18	300050.77	.90	.97
문항06	1174.19	296515.53	.92	.97
문항07	1181.18	298735.96	.83	.98
문항08	1173.65	299699.52	.84	.98
문항09	1166.66	300333.33	.92	.97
문항10	1176.88	300382.91	.81	.98
문항11	1176.34	299458.78	.89	.97
문항12	1177.95	301099.76	.82	.98
문항13	1173.65	301310.63	.79	.98
문항14	1171.50	304059.14	.78	.98
문항15	1182.25	302406.21	.83	.98
문항16	1184.40	300702.50	.79	.98
문항17	1182.25	306572.87	.83	.98
문항18	1176.34	304736.55	.81	.98
문항19	1174.73	300960.57	.85	.98

4. 연구절차

광주광역시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월 광주광역시 내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116개이고 특수학급은 142개 학급으로 파악되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116개 초등학교 142개 특수학급 중 60개 초등학교에 각 5부씩 300부의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해당 학교로 우편 및 등청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특수교사에게 부탁편지를 동봉하여 해당 학교 일반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 10일에 걸쳐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각 10명에게 직접 면접을 통해 1차 예비조사를 하였고, 2010년 3월 29일부터 2010년 4월 14일까지 17일에 걸쳐 2차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0년 4월 20일까지 207부(69%)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부적절한 4부를 제외한 203부를 자료분석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통계별 자료 정리를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계산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각 변인별 인식도와 만족도 차이분석을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3개 집단(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간의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자녀의 장애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 지도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른 교사의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이 때, t-test를 사용하지 않고 ANOVA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3개 집단

간의 차이분석,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분석, 교사의 지도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분석을 볼 때 t-test를 많은 횟수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t-test가 반복될수록 유의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유의수준을 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와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 모든 항목은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는 등간 100점 척도로 재환산하였고, 환산식은 (N-1)×(100/6)이며, 여기서 N은 7점 지수이다. 따라서 환산식을 통해 계산해 보면 〔그림Ⅳ-1〕와 같이 전체 인식도는 63.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 특수교사가 8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가 58.9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교사가 가장 낮은 39.0점으로 나타나 3개 집단간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식도와 비교하여 볼 때 특수교사 집단만이 전체 인식도 보다 21.4점이 높았고, 학부모와 일반교사 집단은 전체 인식도에 비해 각각 4.4점과 24.3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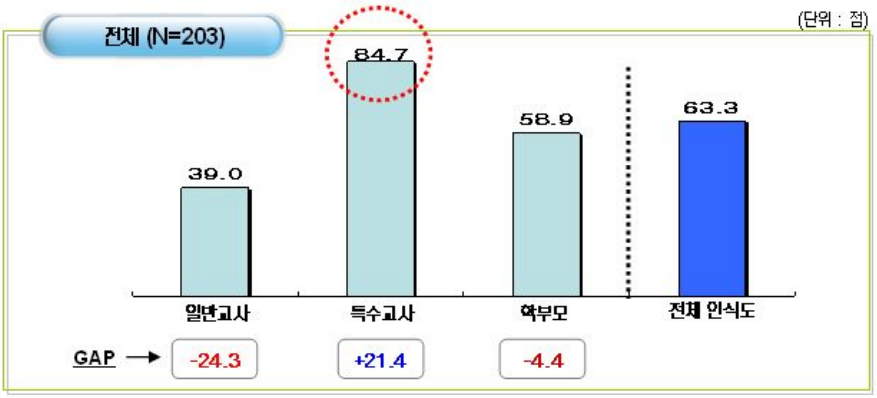

주1) GAP는 전체 인식도 대비 3개 집단(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와의 GAP임.

〔그림 Ⅳ-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각 집단별 인식도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 역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100점 척도로 재환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환산식을 통해 계산해 보면 〔그림Ⅳ-2〕와 같이 전체 만족도는 64.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 특수교사가 72.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가 64.0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교사가 가장 낮은 54.6점으로 나타나 3개 집단간 차이를 약간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인식도와 비교하여 볼 때 특수교사 집단만이 전체 만족도 보다 5.6점이 높았고, 학부모와 일반교사 집단은 전체 만족도에 비해 각각 0.4점과 9.8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1) GAP는 각 집단별 전체 만족도 대비 2개의 만족도(인지적 만족도, 실제적 만족도)와의 GAP임.

〔그림 Ⅳ-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

2. 각 변인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1) 3개 집단(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간의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3개 집단(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Ⅳ-1>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3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낮은 0.00으로 나타나 3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로써 특수교사는 일반교사 보다 인식도에 있어서 평균 45.8점만큼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수교사는 학부모 보다 평균 25.8점만큼, 학부모는 일반교사 보다 평균 19.9점만큼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차이는 모두 α=0.0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Tuckey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1> 3개 집단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일반교사	59	38.95	25.61	3.33	32.28	45.63
특수교사	80	84.72	15.63	1.74	81.24	88.20
학부모	64	58.90	27.00	3.37	52.15	65.64
합계	203	63.28	29.53	2.07	59.19	67.37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72928.76	2	36464.38	70.60	.00
집단-내	103288.84	200	516.44		
합계	176217.60	202			

<사후검증>

(I)집단	(J)집단	평균(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일반교사	특수교사	-45.76	3.89	.00	-54.97	-36.56
	학부모	-19.94	4.10	.00	-29.63	-10.26
특수교사	일반교사	45.76	3.89	.00	36.56	54.97
	학부모	25.82	3.81	.00	16.82	34.82
학부모	일반교사	19.94	4.10	.00	10.26	29.63
	특수교사	-25.82	3.81	.00	-34.82	-16.82

* $p < .05$

<표Ⅳ-2>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3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낮은 0.00으로 나타나 만족도 역시 3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로써 특수교사는 일반교사 보다 만족도에 있어서 평균 17.3점

만큼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특수교사는 학부모 보다 평균 7.9점만큼, 학부모는 일반교사 보다 평균 9.4.9점만큼 높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차이는 모두 α=0.0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Tuckey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2> 3개 집단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일반교사	59	54.61	21.57	2.80	48.99	60.23
특수교사	80	71.94	13.02	1.45	69.04	74.84
학부모	64	64.05	23.68	2.96	58.13	69.96
합계	203	64.42	20.62	1.44	61.56	67.27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10203.58	2	5101.79	13.47	.000
집단-내	75724.64	200	378.62		
합계	85928.22	202			

<사후검증>

(I)집단	(J)집단	평균(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일반교사	특수교사	-17.32	3.33	.00	-25.20	-9.43
	학부모	-9.43	3.51	.02	-17.72	-1.14
특수교사	일반교사	17.32	3.33	.00	9.43	25.20
	학부모	7.88	3.26	.04	0.18	15.59
학부모	일반교사	9.43	3.51	.02	1.14	17.72
	특수교사	-7.88	3.26	.04	-15.59	-0.18

* $p < .05$

2)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교사(일반교사, 특수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Ⅳ-3>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32로 나타나 교사의 교육경력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Ⅳ-3〕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경력 중 5~10년이 7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20년(67.3점), 1~3년(61.9점), 3~5년(61.2점), 10~15년(57.5점), 20~25년(57.3점), 1년 미만(54.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년 미만	6	54.76	42.45	17.33	10.21	99.31
1~3년	13	61.94	44.56	12.36	35.01	88.87
3~5년	32	61.23	30.20	5.33	50.34	72.12
5~10년	46	73.69	29.42	4.33	64.95	82.42
10~15년	22	57.54	26.23	5.59	45.91	69.17
15~20년	11	67.31	15.34	4.62	57.01	77.62
20년이상	11	57.34	29.55	8.91	37.49	77.19
합계	139	64.68	30.72	2.58	59.56	69.80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6590.23	7	1098.37	1.17	.32
집단-내	125616.05	131	937.43		
합계	132206.28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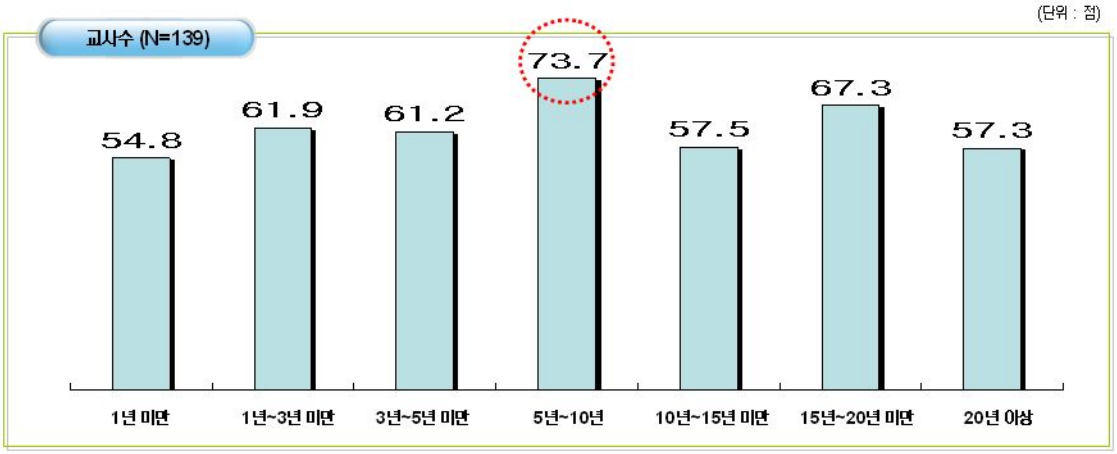

〔그림 Ⅳ-3〕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

또한 <표Ⅳ-4>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낮은 0.01로 나타나 인식도와 달리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사의 교육경력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Ⅳ-4〕에 따르면, 교사의 교육경력 중 15~20년이 7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10년(70.0점), 3~5년(65.3점), 10~15년(62.1점), 20년 이상(60.3점), 1~3년(54.3점), 1년 미만(46.8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Ⅳ-4>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5523.19	7	920.53	2.62	.01
집단-내	46994.87	131	350.70		
합계	52518.07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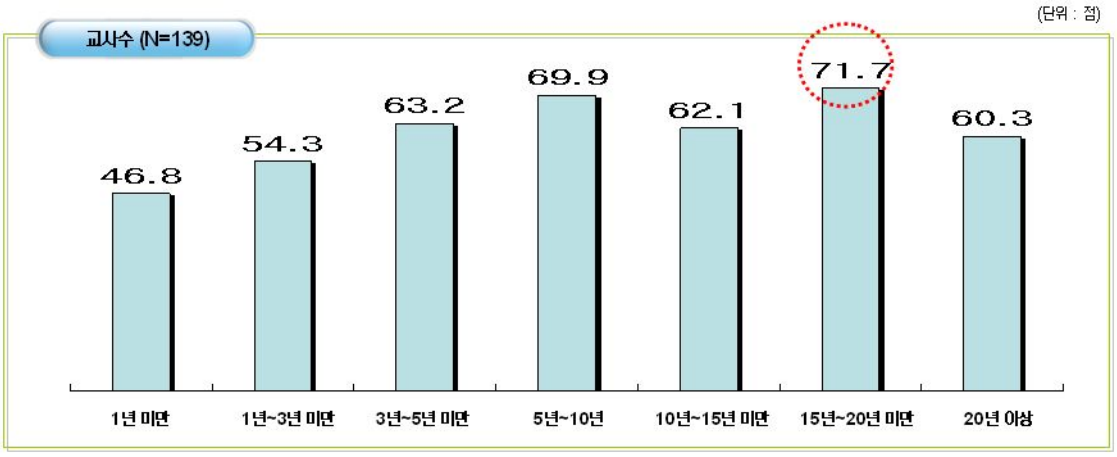

〔그림Ⅳ-4〕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만족도

3) 성별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성별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Ⅳ-5>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우선 두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 하에 t-검증을 사용한 것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 p값는 0.63로서 유의수준 0.05 이상임으로 등분산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값이

-2.15이고 p값은 0.03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보다 작으므로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성별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t-test 결과

<집단통계량>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인식도	남자	25	51.44	30.39	6.07
	여자	178	64.94	29.11	2.18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들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평균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23	.63	-2.15	201	.03	-13.49	6.25	-25.82	-1.16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09	30.51	.04	-13.49	6.45	-26.68	-.31

또한 <표Ⅳ-6>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 p값은 0.08로서 유의수준 0.05 이상임으로 등분산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값이 -1.90이고 p값은 0.05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성별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

<집단통계량>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인식도	남자	25	57.11	16.59	3.31
	여자	178	65.44	20.96	1.57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들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평균의95% 신뢰구간 하한	평균의95% 신뢰구간 상한
등분산이 가정됨	3.10	.08	-1.90	201	.058	-8.33	4.37	-16.96	.2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27	35.72	.029	-8.33	3.67	-15.78	-.88

또한 〔그림Ⅳ-5〕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서 성별이 여자(62.9점)가 남자(51.4점) 보다 더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서도 성별이 여자(65.4점)가 남자(57.1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6〕 성별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4) 연령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연령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Ⅳ-7>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89로 나타나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7> 연령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20대	40	61.63	33.94	5.36	50.77	72.49
30대	97	64.86	29.48	2.99	58.92	70.81
40대	60	61.61	26.87	3.46	54.67	68.56
50대이상	6	65.31	30.40	12.41	33.40	97.22
합계	203	63.28	29.53	2.07	59.19	67.37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543.74	3	181.24	.20	.89
집단-내	175673.85	199	882.78		
합계	176217.60	202			

또한 〔그림Ⅳ-6〕에 따르면, 연령 중 50대 이상이 6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64.8점), 20대(61.6점), 40대(61.6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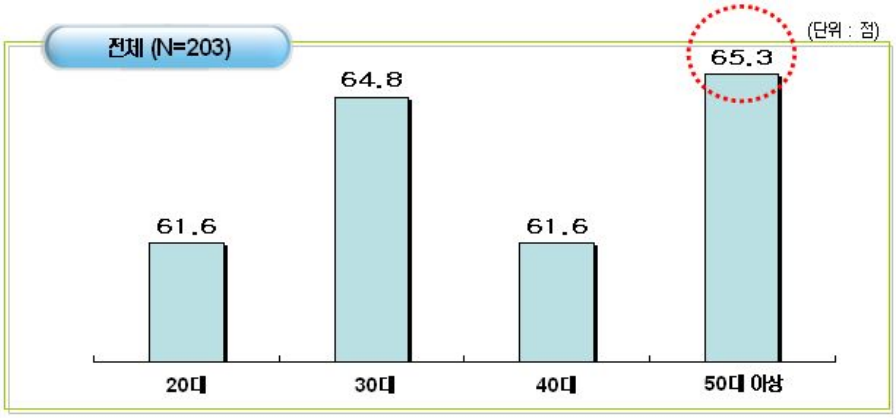

〔그림 Ⅳ-6〕 연령별 따른 인식도

<표Ⅳ-8>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58로 나타나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만족도에 있어서도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Ⅳ-7〕에 따르면, 연령 중 50대 이상이 6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66.4점), 30대(64.5점), 20대(60.8점)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Ⅳ-8> 연령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20대	40	60.76	19.28	3.04	54.59	66.93
30대	97	64.51	18.99	1.92	60.68	68.34
40대	60	66.38	22.97	2.96	60.44	72.31
50대이상	6	67.61	31.09	12.69	34.97	100.25
합계	203	64.42	20.62	1.44	61.56	67.27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826.71	3	275.57	.64	.58
집단-내	85101.51	199	427.64		
합계	85928.2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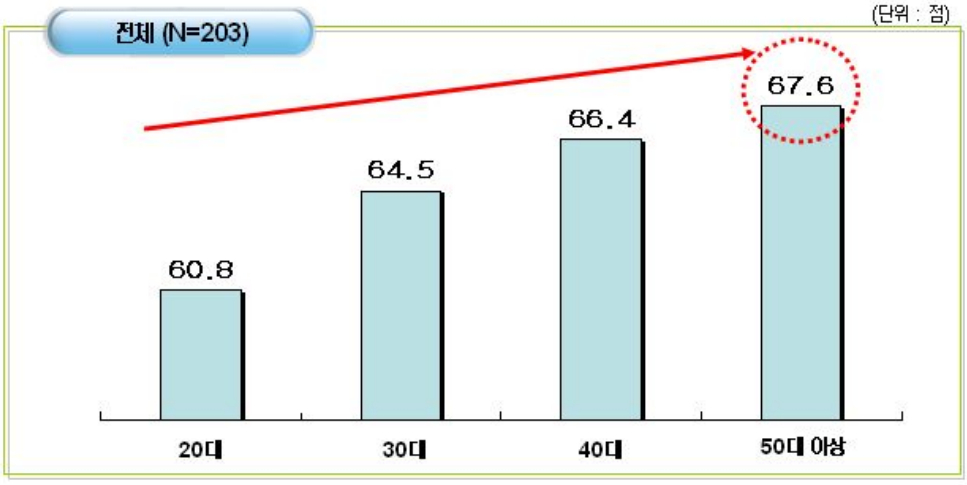

〔그림 Ⅳ-7〕 연령별 따른 만족도

5)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Ⅳ-9>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21로 나타나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9>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체장애	4	76.85	20.12	10.06	44.81	108.88
정신지체	32	55.35	29.29	5.17	44.79	65.92
정서장애	20	65.63	25.67	5.74	53.61	77.64
청각장애	1	25.00	-	-	-	-
기타장애	7	50.47	14.96	5.65	36.63	64.30
합계	64	58.90	27.00	3.37	52.15	65.64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4242.31	4	1060.57	1.50	.21
집단-내	41689.46	59	706.60		
합계	45931.77	63			

〔그림Ⅳ-8〕에 따르면,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를 둔 학부모가 7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65.6점), 정신지체 자녀를 둔 학부모(55.4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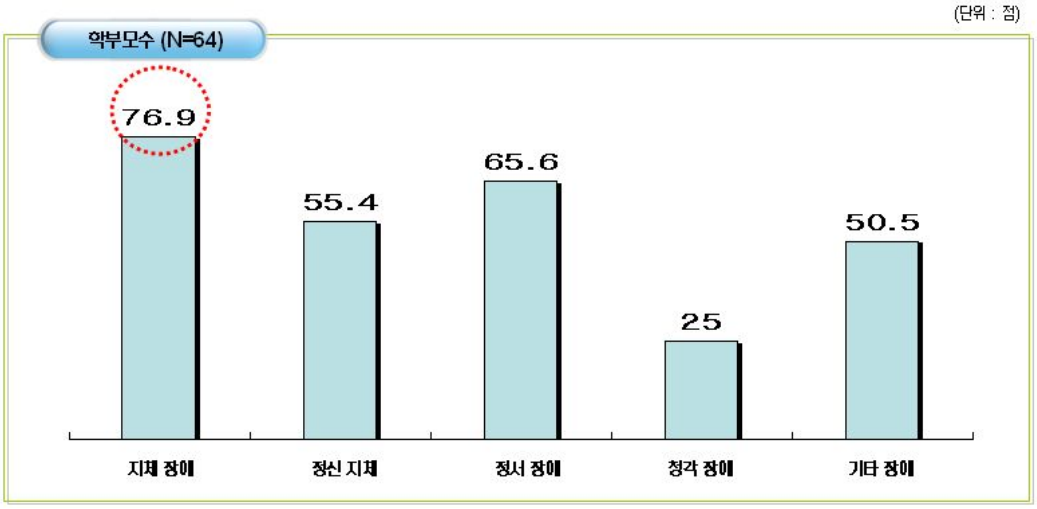

〔그림 Ⅳ-8〕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별 따른 인식도

다음 <표Ⅳ-10>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08로 나타나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만족도에 있어서도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Ⅳ-9〕에 따르면,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만족도에서도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를 둔 학부모가 7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72.5점), 정신지체 자녀를 둔 학부모(6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체장애	4	75.67	11.86	5.93	56.78	94.56
정신지체	32	61.28	25.96	4.59	51.91	70.64
정서장애	20	72.49	16.19	3.62	64.91	80.06
청각장애	1	63.90	-	-	-	-
기타장애	7	46.00	27.48	10.38	20.58	71.41
합계	64	64.05	23.68	2.96	58.13	69.96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4491.18	4	1122.79	2.14	.08
집단-내	30836.63	59	522.65		
합계	35327.8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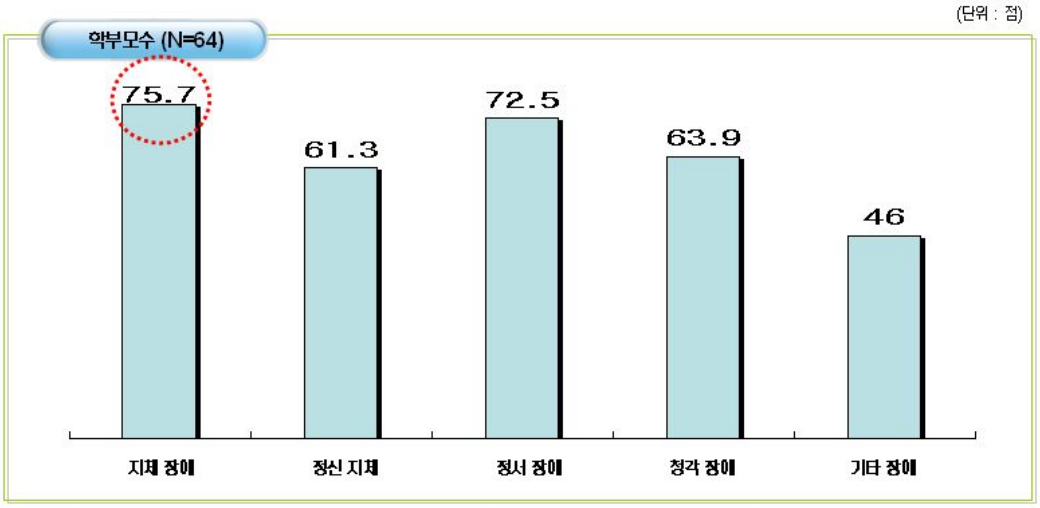

[그림 Ⅳ-9] 학부모 자녀 장애유형별 따른 만족도

6)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비교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Ⅳ-11>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41로 나타나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Ⅳ-10〕에 따르면,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를 지도하는 교사가 7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신지체를 지도하는 교사(65.2점), 시각장애를 지도하는 교사(64.8점), 청각장애를 지도하는 교사(63.8점), 정서장애를 지도하는 교사(56.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체장애	38	73.30	21.91	3.55	66.10	80.50
정신지체	46	65.22	32.34	4.76	55.61	74.82
정서장애	31	56.89	38.53	6.92	42.75	71.02
시각장애	8	64.75	28.90	10.21	40.58	88.91
청각장애	5	63.82	28.37	12.68	28.58	99.05
기타장애	11	62.72	23.09	6.96	47.21	78.23
합계	139	65.30	30.51	2.58	60.18	70.41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4712.36	5	942.47	1.01	.41
집단-내	123780.23	133	930.67		
합계	128492.60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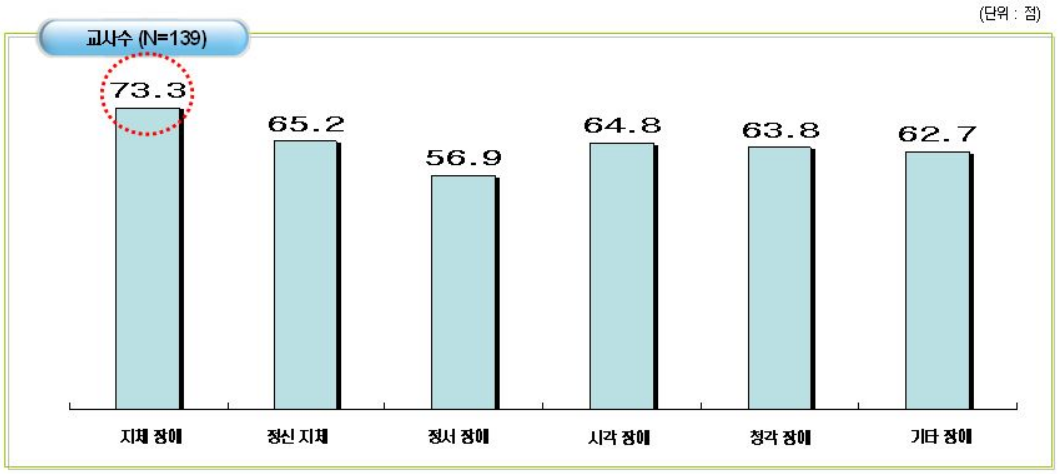

〔그림 Ⅳ-10〕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별 따른 인식도

<표Ⅳ-12>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이며, p값이 유의수준 0.05 보다 높은 0.48로 나타나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만족도에 있어서도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Ⅳ-11〕에 따르면, 만족도는 인식도와 달리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 중 청각장애를 지도하는 교사가 7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장애를 지도하는 교사(68.1점), 시각장애를 지도하는 교사(66.7점), 지체장애를 지도하는 교사(66.3점), 정신지체를 지도하는 교사(6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체장애	38	66.30	13.89	2.25	61.73	70.87
정신지체	46	61.28	23.31	3.43	54.36	68.20
정서장애	31	68.11	21.13	3.79	60.36	75.86
시각장애	8	66.66	14.22	5.03	54.76	78.55
청각장애	5	70.58	15.82	7.07	50.93	90.22
기타장애	11	58.31	12.35	3.72	50.01	66.61
합계	139	64.58	19.14	1.62	61.37	67.80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값	p값
집단-간	1645.51	5	329.10	.89	.48
집단-내	48942.29	133	367.98		
합계	50587.81	138			

〔그림 Ⅳ-11〕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별 따른 만족도

3. 변수들간의 유의성 검증

상관관계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즉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채서일, 2000).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정도는 특정변수의 분산 중에서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분산(공분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단 이러한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관계분석은 변수들간의 관련성의 존재여부를 알아보고 실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게 해줄 뿐, 이것이 어느 특정 변수가 증가하여 다른 변수도 증가하였는지, 즉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3>와 같이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r)는 0.67로서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인식도	만족도
인식도	pearson 상관계수	1	.67
	유의확률(양쪽)		.00
	N	203	203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67	1
	유의확률(양쪽)	.00	
	N	203	203

주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2)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Ⅳ-14>와 같이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간의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r)는 0.76로서 인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질적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4>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인지적 만족도	실질적 만족도
인지적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1	.76
	유의확률(양쪽)		.00
	N	203	203
실질적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76	1
	유의확률(양쪽)	.00	
	N	203	203

주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V. 논 의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개별화교육 강화, 보호자 교육참여 기회의 확대, 관련서비스 지원의 내용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변인별로 분석하여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내의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집단별 반응빈도를 산출하였고, t-test와 ANOVA분석을 통해 각 변인별로 비교하였으며,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 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에 대한 조사 결과 특수교사, 학부모, 일반교사의 순으로 인식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00점으로 환산한 전체 인식도가 63.3 점이었으며 특수교사가 84.7점, 학부모가 58.9점, 일반교사가 39점으로 나타났다. 인식도에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45.7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다. ANOVA분석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은(2008)의 연구에서도 일반초등

교사의 특수교육법 개정여부와 개정 내용에 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특수교육에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집단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인식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크다는 사실은 성공적이고 협력적인 특수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만족도는 세 집단의 전체 만족도 점수가 64.4점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로는 특수교사가 72점, 학부모가 64점, 일반교사가 54.6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만족도와 비교하여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전체 만족도 점수보다 높거나 비슷하지만 일반교사의 만족도는 대략 10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OVA분석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들 또한 눈에 보이거나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법률로써 통제되어지고 수행되어진다. 따라서 법률에 대한 만족도는 교사의 효능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를 점수화 한 결과 세 집단 중 일반교사의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말하면 만족도 점수가 낮은 일반교사가 특수교육에 대해 낮은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각 변인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분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여러 가지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교사의 성별, 연령, 학부모의 자녀 장애유형,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사의 교육경력 변인에서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경력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식도와 만족도의 관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식도와 만족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r)는 0.67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식도와 만족도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만족도 중에서 개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인지적 만족도와 개정의 내용대로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실질적 만족도의 관계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기면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며 만족도 중에서도 인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생기면 실질적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활동 등을 통하여 인식도를 높이면 개정된 법과 실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 및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도는 특수교사의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학부모, 일반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식도에 비해 특수교사의 인식도가 높았으며 학부모와 일반교사의 인식도는 전체 평균 인식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도의 순서도 인식도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사, 학부모, 일반교사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전체 만족도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일반교사는 전체 만족도에 비하여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둘째,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인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는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사 집단에서 교육경력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보았더니 인식도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육경력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경력 15~20년, 5~10년, 3~5년, 10~5년, 20년 이상, 1년 미만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여보니 인식도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성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해보니 연령에 따라서는 인식도와 만족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장애유형간의 인식도와 만족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도학생 장애유형에 따른 인식도와 만족도 또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인식도와 만족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인식도와 만족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식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족도 중에서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의 관계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인지적 만족도와 실질적 만족도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질적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수교사, 학부모, 일반교사 순으로 인식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사와 학부모, 일반교사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어지고 있다. 협력이라는 것은 인지적, 정의적, 물리적인 요소들이 원활히 소통할 때 가능할 것이다. 특수교육법에 관한 각 집단별 인식도에 차이가 나타났음은 원활한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집단별로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대한 인식도를 높

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표본의 구성이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제한점이 있다.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그 적용의 범위가 전 국가적이다. 미국, 독일 등 여러 외국의 경우에는 입법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 법의 입법과정 및 법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활발히 시행하여 법이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법 적용 대상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어지는 법으로 운영되어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장특법의 시행이 2년여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장특법에 대한 평가를 국가차원에서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개정 내용 중 개별화교육 강화, 보호자의 교육참여 기회의 확대,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의 세 가지 주요 부문에 대하여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개정내용의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인식도와 만족도를 추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의 법규나 정책을 이반 또는 집행하고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정비·확립하며 교육조직구성원의 협동적 행위를 능률적으로 조성하는 수단적인 활동의 과정을 교육행정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에 관한 연구로 특수교육행정 분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교육행정 분야의 연구들은 많지 않은 것을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특수교육행정 분야의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 특수교육의 효과와 능률이 극대화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6).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교원소청심사위원회대강당, 서울특별시.

교육과학기술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령 해설집.** 서울: 저자.

김경열 (2005). 영미 특수교육 관련법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용욱 · 유종열 · 백운찬 (20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특수교육의 변화. **특수아동교육연구, 11**(4), 259-283.

김원경 (2001). **특수교육법신론.**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김원경 (2004). **특수교육법신론(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김은주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이해. **현장특수교육, 5-6월호**, 게제번호 10

김재은 (2008).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심인주 (2010).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의 구조와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상복 (2008).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정서 · 행동장애 관련 교육과제. **정서·행동장애연구, 24**(4), 1-18.

이혜원 (1992).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5.25. 법률 제 8483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국회최순영의원실(2006).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자료집 (전국교육권연대-10).**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정영조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서울: 한국법

제연구원.

채서일 (2005). **사회과학조사방법론(제3판).** 서울: 비앤엠북스.

한규옥 (2005). 초등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진흥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현민 (2003).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1): 주요 용어의 정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연구, 10**(1), 3-32.

<부　록>

설문지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과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08년에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으로 특수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른 일반교사, 특수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합니다.
설문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여러분들께서 평소 느끼고 생각하신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이 앞으로 특수교육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김민하

설문지 작성시 유의사항

- ◆ 본 질문지는 개인의 소속과 성명을 기입하지 않는 '무기명' 조사이오니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느낀 바 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질문지는 표지 포함 총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직접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이며, 4월 14일까지 동봉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통합적인 분석을 위해 중간에 빠진 문항 없이 모두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 ◆ 질문지 배포/회수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민하 (☎ 010-3514-5764)에게 연락주십시오.

Ⅰ 귀하의 특수교육법 개정내용에 대한 인식도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들을 자세히 읽으신 후 '매우 그렇다'(7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평소 귀하의 느낌이나 인식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보기를 1개씩만 골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보 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장특법에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대하여 다양한 인력이 협력하여 논의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규정을 갖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장독법에는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장독법에는 '개별화교육계획' 문서를 별적 문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을 위한 세부 업무를 특수교육교원이 전반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장독법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할 때 보호자의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2주 이내에 보호자에게 통보토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의 필요에 대한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하는 자녀에 대해 의무교육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보호자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장독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교육지원내용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장독법에는 보다 다양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 '관련 서비스' 정의를 신설한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장독법에는 '치료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장독법에는 '통학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장독법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장독법에는 '학습보조기기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장독법에는 '정보접근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장독법에는 '상담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장독법에는 '가족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나는 누구보다도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귀하의 현재 특수교육법 개정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질문들을 자세히 읽으신 후 '매우 그렇다'(7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 점)까지 평소 귀하의 느낌이나 인식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보기를 1 개씩만 골라 정확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보 기]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나는 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개별화교육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보호자의 교육 참여 기회의 확대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개정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관련 서비스 지원 (통학, 치료, 상담 등)** 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현재 특수교육에 있어 개별화교육 강화되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현재 특수교육에 있어 보호자의 교육 참여가 2 년전 보다 확대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현재 특수교육에 있어 관련 서비스 지원(통학,치료,상담,가족 등)이 2 년전 보다 더 좋아진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특수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어 잘 개정되었다**고 생각하며,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만약, 현재 개정된 특수교육법에 대해 좀더 앞으로 **보안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중 하나만 골라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3. 장애 영유아교육
4. 장애학생의 초중등교육
5.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6.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

III. 마지막으로 응답자 통계 분류 질문입니다.

본 응답자 통계 분류 질문은 조사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보기 중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D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D2. 귀하의 연령대는? 1. 20 대 2. 30 대 3. 40 대 4. 50 대 이상

D3. 귀하의 신분은? 1. 일반교사 2. 특수교사 3. 학부모

D4. 그럼, 현재 귀하가 교사라면 **총 학교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1. 1 년 미만
2. 1 년~3 년 미만
3. 3 년~5 년 미만
4. 5 년~10 년 미만
5. 10 년~15 년 미만
6. 15 년~20 년 미만
7. 20 년~25 년 미만
8. 25 년 이상

D5. 그럼, 현재 귀하가 교사라면 현재 근무학교는?

1. 일반학교 통합학급 2. 일반학교 특수학급 3. 특수학교

D6. 그럼, 현재 귀하가 교사라면 지도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유형은? (주요 장애에 한가지만 표시)

1. 지체장애 ( )명
2. 정신지체 ( )명
3. 정서장애(자폐포함)( )명
4. 시각장애 ( )명
5. 청각장애 ( )명
6. 기타( )( )명

D7. 그럼, 현재 귀하가 학부모라면 자녀의 장애 유형은? (주요 장애에 한가지만 표시)

1. 지체장애 ( )명
2. 정신지체 ( )명
3. 정서장애(자폐포함)( )명
4. 시각장애 ( )명
5. 청각장애 ( )명
6. 기타( )( )명

지금까지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학과	학 번	2004726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민하 한문 : 金旼河 영문 :Kim Min Ha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삼익아파트 103동 607호				
연락처	E-MAIL : alsgk80@nate.com				
논문제목	한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인식과 만족도 조사 영어 :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n Special Education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

2010년 8 월 25일

저작자: 김민하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